

## NH Bank legal brief

## 우리금융지주 DLF 2심 판결의 주요 쟁점

2022. 8. 19.

## □ 사건 개요

최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은 2017년경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였는데,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에 대하여 당시 우리은행의 대표이사 및 WM그룹장, 주요 직원들에 대하여 문책경고, 감봉요구 등의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은행 대표이사 등은 위 금감원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금감원이 인정한 처분사유로서 5가지의 위반 사실 중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만 인정하면서, 금감원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615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금감원은 항소하였는데, <u>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u>은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u>1심 판결이 인정하였던 나머지 한 가지 위반사실까지 징계의 사유가</u>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60238 판결).

2심 판결은 금감원의 징계 처분사유에 대해 다양한 논거들을 들며 반박하였지만, 핵심은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구분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형식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두었더라도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을 구현할 수 없다면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설정·운영상의 준수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붙임자료)

금감원 처분 사유 및 법원의 판단						
금감원 징계 처분 사유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sup>1)</sup>		1심	법원의 판단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 금융회사 지배구조	①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미비:  ② 사모펀드 출시 과정에서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음	부정	부정	<ul> <li>○ 우리은행은 내부통제기준(펀드업무지침)에 "기존상품과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한 유사한 구조"의 상품에 대하여 상품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li> <li>다시 위 "유사한 구조상품"을 판단하는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홈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li> <li>○ 우리은행이 신규 출시한 해외금리 연계 DLF 360개중 357개의 상품에 대한 심의를 생략하여 상품에 내재된 위험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못한 것은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과정에서의 잘못에 해당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미비한 것은 아님</li> </ul>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등	②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 ○ 사모펀드 판매 이후 사모 펀드 위험 관리 업무와 소 비자보호 업무 관련 규정, 이를 수행할 조직에 대한	부정	부정	O 우리은행의 집합투자상품 판매매뉴얼은 펀드의 판매절차를 투자자 정보부터 사후관리까지 6단계로 나누어 사후관리서비스를 규정하였고, 업무분담 규정에따라 WM전략부, WM추진부,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등이제휴상품 실적관리, 모니터링, 소비자 불만 대응 등의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범위 및 절차, 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기준 을 마련하지 않음 O DLF 등 사모펀드에 대해서 원금손실조건 통지 등 소 비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ul> <li>○ 자산관리영업 관련 리스크 분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WM전략부 내 투자전략팀의 업무처리 세부기준이 다소 미흡하고 인력이 1명에 불과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내부통제기준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li> <li>○ DLF와 같은 사모펀드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원금손실조건을 통지하는 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만으로 실효성있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li> </ul>
	③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기준 미비 :  ○ 상품선정위원회 회의결과통지 및 보고, 위원선정·교체에 대한 기준·절차·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음	인정	부정	<ul> <li>○ 상품선정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기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결에 참여한 위원들은 의결 결과를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심의결과 통지, 위원선정 및 교체절차 등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흥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li> <li>○ 심의 투표결과 조작, 평가표 위조 등으로 상품이 출시된 것은 내부통제기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탈사례로서, 회의결과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li> </ul>
	④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기준 미비 :  ○ 적합성보고서와 관련하여, 상품의 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	부정	부정	O 위험등급에 맞지 않는 '안정성 고려'를 투자 추천사 유로 선택하여 <u>초고령자, 신규거래자 등에 대한 판</u> <u>매가 35.9% 확인되었으나, 이는 내부통제기준 운영</u> <u>상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u>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O DLF 등 위험등급 1등급의 상품에 대하여 투자 권유 사유로 '안정성 고려'를 선택하는 것을 전산시스템상 <u>차단하지 않은 것은 세부적이고 지엽적</u> 인 미비점에 불과함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 업무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의무 위반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등	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	부정	부정	<ul> <li>○ 우리은행 내부통제규정은 준법감시인이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의 중요도, 위험도 등은 준법감시인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함</li> <li>○ 우리은행 내부통제규정에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준수 확인절차·방법', '내부통제 위반 임직원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법정사항을 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li> </ul>

<sup>1)</sup> 금감원은 DLF 원금손실 문제 관련 우리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제재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은 처분사유 ②에 관한 것임

## ※ 처분사유 (위법·부당행위)

- ① DLF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6월, 과태료 11억원
- ②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기관경고, 기관 과태료 5,000만원
- ③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기관경고, 과태료 185억 6,000만원